

리카온 손해사정법인 위탁조사수수료 내부교육 시행 확인서

교육일시	2019년 03월 06일 목요일	교육장소	본사 회의실 및 홈페이지등재
참석자	유상현, 이동식, 김남덕, 김종철, 한일석, 강학부, 차준호, 노승일, 최인영 (총 9명)		
교육명	위탁조사수수료 기준	교육대상	삼성화재1종 처리 담당자

1. 교육목적

- 위탁조사수수료 청구시 문제발생 사전예방

2. 교육내용

- 단순사고 및 면책, 소송 등에 대한 보수기준
- 일비, 교통비 지급 기준
- 그 외 보수 산정과 관련된 내용 일체

상기와 같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조사수수료 지급기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수료 청구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과 이와 관련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9년 03월 07일

리카온 손해사정법인대표이사 유상현



서명 또는 직인

제1종 손해사정 보수산정기준

(삼성화재)

1. 목적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제1종 손해사정 위임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기준에서 "손해사정 업무"라 함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한 손해사정 업무를 말하며, 손해액 사정업무와 보험금 사정업무를 포함한다.

2. 적용범위

위임인이 손해사정업무 중 일부만 위탁하거나 기타 개별적으로 사전에 협의하여 보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보다 위임인·수임인 간의 협의가 우선 적용된다.

3. 타사 증복보험時 적용방식

- ① 1사고 1물건에 대하여 위임인의 타보험사(공체 포함)가 관련되어 각 보험사가 공동으로 1선임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보수를 기준으로 각 보험사가 협의하여 비례 분담한다.
- ② 1사고 1물건은 하나의 피보험자 기준으로 재물, 배상책임 각각을 말한다.
- ③ 보험사별 선임 손해사정사 보수기준이 다른 경우 관련사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4. 보수의 기준

- ① 손해사정업무 위탁에 대한 선임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별표 1. 손해사정 보수기준"과 "별표 2. 여비·교통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기 산정한 금액에 당해 사고의 특성상 관계 전문인의 활용 등 이례적인 부대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소요실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보수 중 부대비용은 사전에 위임인의 동의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 ③ 의료심사 및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위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손해사정 보수와 별개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5. 일부 위탁 및 전부 위탁의 적용 보수

"4. 보수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정 보험종목이나 담보위험의 종류 또는 보험사고 일체에 관한 손해사정업무를 특정 손해사정법인에게 일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인과 수임인이 사전 협의에 의하여 이 보수 산정기준과는 별도로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보수의 추가 지급

위임대상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수는 위임 시 또는 위임처리 업무 종결 전에 위임인과 수임인이 협의하여 위임인이 결정한다.

5. 보수의 감액 및 부지급

① 수임인이 손해사정업무 수행 중 아래의 사유로 보험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대외기관에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 위임인은 "4. 보수의 기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과 2에 따라 산정된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i) 합리적인 사유없이 고의나 중과실로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
- ii) 보험약관 또는 보험조건을 사실 및 실무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

② 수임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사실, 보험가액, 손해액 등 손해사정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통상적인 손해사정 절차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업무 수행 시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보수의 지급시기

위임인은 수임인이 최종 손해사정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 영업일 내에 보험금 지급 또는 소송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사정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서류 미비, 보고서 수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최종 손해사정 보고서의 보완 필요 등 위임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별표 1. 제1종 손해사정 보수기준

별표 2. 제1종 손해사정 여비·교통비 지급기준

별표1

제1종 손해사정 보수기준 ('18年)

I. 개요

손해사정보수 기준은 1) 손해액 기준 2) 단순사고 적용 3) 업무시간 기준, 4) 풍수해보험 기준 총 4가지 방식을 적용한다.

II. 손해액 기준

「III. 단순사고 적용」, 「IV. 업무시간 기준」, 「VI. 풍수해보험 기준」 외 보험사고에 적용한다.

□ 손해사정 보수표

손해사정금액	요율	기준액(원)	요율 가감산 요소	
			감산율	가산율
3백만원 미만	기본료	515,000	-10% +20% +10%	
5백만원 미만		670,000		
1천만원 미만		750,000		
~2천만원 미만		1,120,000		
~3천만원 미만		1,380,000		
~5천만원 미만		2,060,000		
~1억원 미만		3,168,000		
~2억원 미만		3,872,000		
~3억원 미만		4,818,000		
~5억원 미만		6,655,000		
~10억원 미만		10,640,000		
~20억원 미만		15,680,000		
~30억원 미만		21,420,000		
~50억원 미만		32,200,000		
~100억원 미만		별도규정		
100억원 초과		별도규정		

□ 보수 산정방식

1. 이 기준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별 1사고 1물건을 단위로 하며, 손해사정업무를 수임하는 선임 손해사정사마다 각각 적용한다.
단, 공동건물의 경우 총손해사정금액은 각 피해세대별 손해액 확정금액을 합산적용하나, 각 세대별 피해수에 따라 아래 9항의 할증율을 가산한다.
2. 단체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피해수에 따라 아래 9항의 할증율을 적용하나, 피해 목적물별 거리, 평가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할증율을 가감할 수 있다.
※ 단체사고란, 하나의 위험(Peril)에 대해 하나의 증권에서 피보험자가 다수 존재하거나, 발생장소가 다수 존재할 때 1개의 손사법인에서 일괄 업무처리 시 해당사고를 말한다.
3. 1사고에 대하여 1선임손해사정사가 2물건 이상의 손해사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물건당 기본료만을 지급할 경우에는 2물건까지는 기본료 정액을, 2물건을 초과하는 물건부터는 기본료의 50%를 적용한다.
4. "지급보험금액"이 "손해액 확정금액"의 30%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손해액 확정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손해사정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배상책임을 담보한 보험약관(특별약관 포함)에 대한 손해사정업무의 경우,
"손해사정금액"은 약관상 담보하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액에서 자기부담금 등의 공제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고, 위임자는 손해조사 위임 시 조사대상 물건(또는 내용)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약관에 따라 부상·장해 금수별 한도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손해사정금액으로 한다.
6. 화재, 폭발, 풍수재 등 재물 전손사고의 손해사정 기본보수는 손해액 확정금액의 50%를 손해사정금액으로 하여 위 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손사고라 함은 손해액 확정금액이 보험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부보율이 50% 미만인 일부보험의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손해사정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동산의 경우 전수조사 시행한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대인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손해액확정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정한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손해사정금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을 "손해사정 금액"으로 산정하여 위 표의 요율을 적용한다.
단,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해외근재 포함)은 상기 1.5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손해사정업무 수행 중 위임인이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확정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별표1. 손해사정보수표」의 "최저 기본료"와 「별표2. 여비·교통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임인의 요청에 의해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평가할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손해사정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III. 업무시간 기준」을 준용하되, 이에 따른 보수는 추정손해액의 50%를 기준으로 손해사정 금액별 적용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9. 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또는 피해세대수)가 5인 이상인 집단사고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할증율을 적용한다. 이 때 피해세대수 구분이 가능한 경우, 피해 세대수를 우선으로 하여 적용한다.

단, 아래의 경우는 할증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① 다수 피해자(피해물)라 하더라도 피해자 中 대표 1人이 위임받아 업무 일체를 대리하는 경우
- ② 피보험자의 先배상 사고로, 피보험자에게 다수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구분	할증율
5 ~ 10인(세대) 미만	손해사정 보수의 1.2배
10 ~ 30인(세대) 미만	손해사정 보수의 1.5배
30 ~ 200인(세대) 미만	손해사정 보수의 2배
200인(세대) 이상	손해사정 보수의 3배

10. 이 보수표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또는 기본료) 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기준액(또는 기본료)을 적용한다.

11. 손해사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손해사정 보수를 산정한다.

손해사정금액	손해사정 보수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2,200,000원 + (손해사정금액-50억원) X 0.28%
100억원 이상	46,200,000원 + (손해사정금액-100억원) X 0.1%

12. 상기 보수 산정 방식에도 불구하고, 시큐리티종합보험 화재지원금의 경우 '지급보험금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한다. 단, 위임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목적물에 대한 실사를

통해 손해액을 평가한 경우에는 '손해사정금액' 방식을 적용한다.

□ 요율의 가감 적용

1. 요율은 표준요율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인은 난이도, 투입시간, 조사자의 전문성 및 노력도 등 위임대상의 특성에 따라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위 1항과 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기본요율 $\times (1 + 1\text{항 가산율})$ 의 방식으로 최종 요율을 적용한다.

□ 현장활동 보수 (손해사정금액 10억 초과건)

1. 기준 : 현장활동 5회 초과 + 총동원인원 10인 초과
2. 대상 : 현장활동 1회당 업무시간 6시간 이상 (이동시간 포함)
3. 경력별 보수

경력	인당 보수
5년 미만	10만원
10년 미만	20만원
10년 이상	30만원

※ 적용례 : 조사자 2인(10년 미만)이 현장조사 10회 실시

① 현장활동 10회(>5회)이고 총인원 20인(>10인)으로서 보수 적용기준 충족

② 적용보수 = 10인 (20인-10인) \times 20만원(10년 미만) = 200만원

※ 상기 보수 적용인원(10인)에 대하여 일비 중복적용 불가

※ 위 '보수 산정방식' 제9항의 집단사고 할증율 적용 時 중복적용 불가

III. 단순사고 적용

□ 적용대상 및 보수기준

대상 건	보수
가계성 도난보험	
구내치료비	
비용성 담보 (법률비용담보, 6대가전담보, 골프용품손해, 휴대폰손해, 홀인원보험)	35만원
현장 조사 시행건으로 청구포기 등으로 실질적인 사고조사 및 손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임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차량 파손 사고
손해액 3백만원 이하 대물 사고
가입한도내 실손담보로 손해액 5백만원 이하건

□ 산정기준

- 위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난이도가 높은 건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임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I. 손해액 기준방식」에 따른 보수를 적용할 수 있다.
 - 예: 목적물이 아파트로서 아파트보험 등 중복보험 적용으로 가액 평가 실시 필요件
- 난이도, 투입시간, 조사자의 전문성 및 노력도 등 위임대상의 특성에 따라 추가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임 시 또는 위임처리 업무 종결 전에 위임인과 수임인이 협의하여 기본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위임인이 결정한다.
- 현장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선 확인을 통한 사고조사, 면책, 청구 포기의사 등 이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노력도, 성과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보수의 50%를 지급 한다.

IV. 업무시간 기준

□ 적용대상

- 손해평가 대상이 유체물 · 對人이 아닌 권리, 금전 等을 대상으로 하는 사고
 - 대상 : BBB, DDD, BI(장기보험 제외), D&O, 상금보험, 잔존물회수보험, 권원보험, Mortgages 관련 보험,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변호사, 법무사 등 / 의료배상 제외), 설계감리보험, 건설공사 소음사고 배상책임, 전자금융 배상책임보험, 해외PL 등 이와 유사한 성격의 보험종목
 - 배상책임보험, 도난보험의 금전 · 담보물 등 도난사고는 「I. 손해액 기준방식」의 기본 보수기준을 따른다.
단, 배상책임보험 中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지자체업무배상책임보험은 당사자간 사전 협의에 따라 同 「업무시간 기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소송상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등 소송 발생건에 대한 대응업무에도 준용할 수 있다.
단, 손해액 평가를 위한 감정 대응은 손해액 평가 방식으로 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
- 해외 조사건의 "수임인" 중계 보수(Coordination fee)는 시간당 보수 2배를 한도로 적용 할 수 있다.

□ 보수기준

조사자 경력	시간당 보수
5년 미만	50,000원
10년 미만	70,000원
10년 이상	90,000원
10년 이상 + 우수조사	120,000원

- 보수산정시 시간은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등 실제 소요시간을 적용한다.
- 건의 난이도, 노력도, 성과에 따라 해당 "시간당 보수기준"의 상위 또는 하위를 적용할 수 있다.
- 조사경력은 해당 보종의 업무처리 경력 기준으로 한다.
- 「손해액 기준 방식」이 적용되는 사고와 동시에 수임하는 경우 각각 적용한다.

V. 보험사기 조사

□ 대상 및 지급기준

구분	대상	지급기준
사기입증	아래 ①+②의 결과로 보험사기 해당 금액 부지급 ① 조사자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한 보험사기 입증 ② 형사판결(약식명령 포함) 또는 민사판결(조정 결정 포함)로 보험사기 확정	난이도와 노력도에 따라 추정 지급보험금의 10배 사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함 (한도 2천만원)
우수조사	① 조사자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한 보험사기 입증으로 해당금액 부지급 ② 조사자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민·형사소송(소추 포함) 진행되었으나, 불가피하게 보험금을 지급(일부 지급 포함)한 건	난이도와 노력도에 따라 추정 지급보험금의 5배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함 (한도 1천만원)

□ 청구기준

- 본 규정은 "보수의 추가 지급" 규정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임인은 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보수를 청구할 경우 객관적인 조사 과정과 결과를 근거로 위임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 범위는 위임인이

판단한다.

3. 수임인의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민·형사소송(소추 포함)으로 진행되더라도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 위임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보수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4. 제외 대상

- ① 위임 당시 손해조사의 결과가 예상되는 건
 - ② 위임 당시 손해조사의 결과가 예상되지 않으나, 통상적인 손해사정 절차 또는 법률적 검토 등을 통해 용이하게 처리될 수 있는 건
5. '추정 지급보험금'은 고객 제출 서류를 근거로 한 통상적인 손해액이어야 하며, 감가 未적용, 고액 판례, 無과실 사례, 근거없는 향치비·장해 등으로 추정 지급보험금을 임의적으로 확대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6. 수임인은 보험사기 조사 보수를 청구할 경우에는, 인보이스를 기본수수료(일비, 기타)와 보험사기조사수수료(Best Practice)로 각각 분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VI. 풍수해보험 기준

□ 적용대상

1. 풍수해보험법 제 16조에 따라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풍수해보험 계약 목적물의 손해평가 업무를 의뢰하여 현지조사표를 작성하는 경우 적용한다.

□ 보수기준

1. 기본수수료 : 시간당 5만원 (이동시간 포함)
2. 유류대 : 1km당 200원 / 지점소재지 ~ 현장
3. 대중교통비 : 실비 정산 (증빙제출)
4. 숙박비 : 1박당 5만원

별표2

현장조사 여비·교통비 지급기준

□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비고
교통비	철도임	KTX 일반실 한도
	항공임	Economy
	선임	1등실
	고속(시외)버스 및 기타 교통수단	TAXI 이용시 2회 이상 환승 또는 신속성을 요구하는 경우에限 (사유 기재)
	업무용 승용차	유류비 및 통행료(실비) 아래 참조
일비	30,000원 정액	법정공휴일·토요일 : 60,000원
숙박비	70,000원 한도	1일당 실비

□ 산정기준

- 대한민국내 선임손해사정 법인의 본·지점이 소재하는 동일지역(市·郡단위 기준, 동일市·郡은 편도 50KM 이내)의 여비·교통비 중 "일비"만을 지급한다.
단, 위임인의 요청에 따라 他지역 소재 조사자가 시외 출장한 경우에는 同 「여비·교통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 업무용 승용차 이용시 유류비 : 주행거리×ℓ 당 요금÷(평균연비)
 - ※ 거리기준 : 네이버 "추천경로 또는 최단거리" 기준
 - ※ ℓ 당 요금 : 한국석유공사 공시기준 참고 (www.petroleum.or.kr)
 - ※ 평균연비 : 경유·휘발유용차량 8km/리터 (단, LPG용 차량 6km/리터)
- 대중 교통비 및 숙박비, 통행료는 증빙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4. 일비 인정기준

일비는 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거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① 위임인의 시스템(PRMS시스템 등)상 "진행관리" 화면에 일시 및 소요시간, 장소, 목적, 활동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
- ② 최종보고서 제출 시, 보고서상 일자별 세부내역 정리 기재
- ③ 일비는 1회 업무시간 4시간 이상(이동시간 포함)일 경우에만 인정한다.

5. 기타 제비용

증빙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비를 지급하며, 통상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인과 사전 협의에 의하여 별도 실비를 정할 수 있다.

